

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08.12.22>

승진후보자명부(제25조 관련)

기관명 : 헌법재판소사무처

직급 :	월	일	작성자	서명 또는 날인
	월	일	작성자	서명 또는 날인
	월	일	작성자	서명 또는 날인
	월	일	작성자	서명 또는 날인

순 위				⑤ 소속	⑥ 성명	⑦ 총평정점	평 정 점 내 역			⑪ 비고
① 정기	② 조정	③ 조정	④ 조정				⑧ 근무성적	⑨ 경력	⑩ 가점	

- 비 고 : 1.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 기관 또는 보조기관명(담당관 포함)을 표시한다.
2. 가점의 경우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.
3.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끝 순위 다음에 등재하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한다.
4.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붉은 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인사담당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" 예 시 "	휴직(11. 1.)
---------	------------

5.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.
6. 결재문서와 명부간 및 명부 각 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쪽 표시를 하여야 한다.